

고성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의안번호 제2925호)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5. 3. 21.

김향숙 의원 등 5인

나. 회 부 일 자 : 2025. 3. 28.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25. 4. 9.

산업경제위원회 상정 ·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김향숙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이 조례는 우리 고성군에서 생산 가공된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과 농식품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지역 농업의 발전, 건강 증진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“로컬푸드” 등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2조)
- 2) 로컬푸드 육성·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(안 제3조 및 제4조)
- 3) 로컬푸드 생산, 가공, 유통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5조 및 제6조)
- 4) 로컬푸드 소비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사항(안 제7조 및 제8조)
- 5)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
다. 참고사항

- 1) 관계법령: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, 「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,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
- 2) 입법예고: 고성군의회 공고 제2025-16호
 - 예고기간: 2025. 3. 21.(금) ~ 2025. 3. 27.(목) [6일간]
 - 예고결과: 의견 없음

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 조정제)

○ 제정 목적

- 본 제정조례안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, 고성군 지역농산물과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업의 발전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임.

○ 주요 내용

- (안 제1조 ~ 제2조) 목적 및 정의

-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취지를 설명하고, 안 제2조에서는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규정함.

- (안 제3조 ~ 제4조) 로컬푸드 육성·지원계획 수립, 육성·지원계획의 추진

- 안 제3조에서는 군수는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5년마다 로컬푸드 육성·지원계획을 수립하고, 육성·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, 안 제4조에서는 육성·지원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실태 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- (안 제5조 ~ 제6조) 로컬푸드 생산 및 가공지원, 로컬푸드 유통지원

- 로컬푸드 생산, 가공, 유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 군수는 필요시 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.

- (안 제7조 ~ 제9조) 로컬푸드 소비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등

- 안 제7조에서는 로컬푸드 소비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, 안 제8조에서는 공공기관, 민간단체, 기업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, 안 제9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○ 종합검토 의견

- 본 안건은 고성군에서 생산 가공된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과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지역농업의 발전과 이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, 제정 목적 및 필요성,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5. 4. 9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